

의안번호	제 528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봉회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11월 22일

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김봉회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2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11월 22일  
발의자 : 김봉회, 임순묵, 이광진,  
강현삼, 박병진, 장선배,  
박봉순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이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되어 근거법령을 변경하고, 위원회 간사를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변경(안 제1조)
- 나. 위원회 간사를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(안 제2조제3항)
- 다. 기타 조문 정비 등(안 제2조, 제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 :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와 협의되었음

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충청북도지명위원회의”를 “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구성 등)”을 “(위원회 구성)”으로 하고, 제2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지명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지명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역개발과장”을 “지명업무 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<u>조례는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 9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충청북도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구성 등) ① <u>충청북도지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부위원장은 균형건설국장이 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며, 간사는 지역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 <u>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</u> -----  <u>충청북도 지명위원회</u>  <u>회의</u> -----          -----.</p> 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<u>충청북도 지명위원회</u>-----         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         ----- <u>지명업무 담당과장</u>-----          -----.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]

제91조(지명의 결정)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,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 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며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3.3.23.>

② 지명은 「지방자치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③ 시·군·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,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,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·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,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,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